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780호 2020. 12. 9.(수)</p>	
---	---	---

선 결	기관 의 장

고 시

제2020-13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중로3-6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3
제2020-138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7
제2020-139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8
제2020-140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 설치계획 고시	9
제2020-143호 도로명주소 고시	14

공 고

제2020-1556호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16
제2020-156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16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8
제2020-1574호 군도25호선(보광,성북)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
제2020-1575호 신원 양지(204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29
제2020-1576호 면도 101호선(상개명, 둔기)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35
거창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0-29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13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중로3-6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7-4호(2017.1.11.)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중로3-63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0. 12. 3.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산업단지 연결도로 (변전소~정장마을간) 개설공사	거창	정장	중로	3	63	945	12	29,902	거창읍 정장리 1034-2	거창읍 대평리 1321-3	거창군 고시 제2017-4호 (2017.1.1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21. 6. 30.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중로 3 - 63호선 【산업단지 연결도로(변전소~정장마을간)】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읍)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29,902			
1	정장리	1028-14	잡	18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	정장리	1034-2	구	340		농림축산식품부	
3	정장리	1034-1	도	314		농림축산식품부	
4	정장리	1186	구	347		농림축산식품부	
5	정장리	1028-15	잡	7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6	정장리	1185	도	233		국토교통부	
7	정장리	1022-4	답	543		거창군	
8	정장리	1022-1	답	2,168		거창군	
9	정장리	992-50	과	1,206		거창군	
10	정장리	992-28	과	1,139		거창군	
11	정장리	992-32	구	1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2	정장리	992-43	구	2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3	정장리	992-35	구	2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4	정장리	992-42	과	1,967		거창군	
15	정장리	992-10	전	298		거창군	
16	정장리	992-53	목	693		거창군	
17	정장리	산33-1	임	1,022		거창군	
18	정장리	산32-7	임	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431	경주****공과운 정종중	
19	정장리	937-17	전	637		거창군	
20	정장리	937-16	전	60		거창군	
21	정장리	937-15	전	294		거창군	
22	정장리	1168	구	213		농림축산식품부	
23	정장리	942-1	전	1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06	제*선	
24	정장리	940-1	전	606		거창군	
25	정장리	941-2	도	104		거창군	
26	정장리	941-4	전	743		거창군	
27	정장리	1023-11	답	430		거창군	
28	정장리	1023-13	답	1,494		거창군	
29	정장리	1023-12	답	91		거창군	
30	정장리	1022-2	답	1,258		거창군	
31	정장리	1022-3	답	1,507		거창군	
32	정장리	1022-5	답	70		경상남도	
33	정장리	산41-14	임	665		거창군	
34	정장리	산41-9	임	269		거창군	
35	정장리	산41-15	임	130		거창군	
36	정장리	992-49	구	7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7	정장리	992-44	구	13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8	정장리	992-48	과	1,362		거창군	
39	정장리	992-4	전	291	장팔리	이*훈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읍)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0	정장리	937-14	전	107		거창군	
41	정장리	992-17	도	152		김*한	
42	정장리	992-51	전	571		거창군	
43	정장리	992-13	전	880		거창군	
44	정장리	산36-2	임	910		거창군	
45	정장리	940	전	165		거창군	
46	정장리	939-2	전	1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사마리길 147-9	이 * 재	
47	정장리	929-27	대	18		거창군	
48	정장리	929-5	대	212		거창군	
49	정장리	산25-3	임	196		거창군	
50	정장리	산25-4	임	10		거창군	
51	정장리	산147	도	90		국토교통부	
52	정장리	1175	도	13		국토교통부	
53	정장리	산22-7	임	25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9	이*경외 4인	
54	정장리	산24-1	임	90		거창군	
55	정장리	산23	임	198		거창군	
56	정장리	929-16	전	70		거창군	
57	정장리	929-21	대	1		거창군	
58	정장리	929-20	대	5		거창군	
59	정장리	929-11	대	210		거창군	
60	정장리	929-26	대	47		거창군	
61	정장리	929-8	전	106		거창군	
62	정장리	929-25	대	8		거창군	
63	정장리	929-1	전	52		거창군	
64	정장리	918-4	과	1,510		거창군	
65	대평리	1428-3	전	308		거창군	
66	대평리	1427-2	도	53	하동	김*술	
67	대평리	1427-4	전	49		거창군	
68	대평리	1430-1	전	65		거창군	
69	대평리	1426-3	전	11		거창군	
70	대평리	1426-2	도	10		오*월	
71	대평리	1425-2	전	76		거창군	
72	대평리	1424-4	전	254		거창군	
73	대평리	1422-46	과	255		거창군	
74	대평리	1421-7	주	101		거창군	
75	대평리	1421-3	전	95		거창군	
76	대평리	산15-5	임	31		거창군	
77	대평리	산15-1	도	132		거창군	
78	대평리	1427-6	창	107		거창군	
79	대평리	1427-5	창	366		거창군	
80	대평리	1426-4	창	172		거창군	
81	대평리	1426-5	창	116		거창군	
82	대평리	1425-3	대	252		거창군	
83	대평리	1425-3	대	149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읍)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84	대평리	1424-3	도	40	거창읍 중동 1293	김*문	
85	대평리	1422-6	도	15		김*술	
86	대평리	1422-4	전	124		거창군	
87	대평리	1422-3	대	303		거창군	
88	대평리	1422-48	과	87		거창군	
89	대평리	1422-33	답	5		거창군	
90	대평리	1422	도	19		국토교통부	
91	대평리	1421-5	주	18		거창군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 전작물(소과류 아로니아)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계			8,210m²				
계			8,272m²				
거창군 거창읍	산316-1	당초	6,714m ²	당초 : 196,900천원 변경 : 212,300천원	당초 : 2018. 1. 30 ~ 2021. 1. 31 변경 : 2018. 1. 30 ~ 2021. 1. 3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606	권 영 *
		변경	6,714m ²				
장팔리	산316-9	당초	6,940m ²				
		변경	6,940m ²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20년 12월 4일

거창군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95	당초	12,893m ²	4,848m ²	9,200천원	2020. 2. 8. ~ 2020. 11. 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3길 22	장 영 *
		변경	12,893m ²	4,848m ²	9,200천원	2020. 2. 8. ~ 2021. 11. 30.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20년 12월 7일

거 창 군 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 설치계획 고시

거창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내용

- 가. 사업명 : 거창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사업
- 나. 위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월평리 일원(창포원 내)
- 다. 사업면적 : 202,047㎡
- 라. 총사업비 : 56억원
- 마. 사업기간 : 2020.12. ~ 2022.12.
- 바. 사업내용 : 생태숲 조성, 생태탐방을 위한 체험시설 조성
- 사.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 가. 붙임 조감도 참조
- 나. 기타 관련도서 및 자세한 사업계획은 거창군 환경과 비치·열람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가. 생태계 보존 및 복원 대책

- 습지내 수질보전을 위하여 시설 설치 시 최대한의 이격 및 규모 최소화
- 호수 표면의 산소유입을 막는 유해수초 상시 제거
- 바람에 날려 쌓이는 수중쓰레기 청소
- 토사유출 방지대책 마련(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 침사지 및 우수배출지점 등 수질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분석 등

나. 동·식물 관리대책

-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가 창포원을 방문하는 동절기는 공사를 지양
- 데크산책로 설치 시 철새가 주로 서식하는 곳 주변은 조류관찰대를 설치하여 사람과 조류가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도록 함
- 어류의 종 다양성 및 개체 증가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관리와 낚시금지 구역 지정 등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대책

가. 탐방시설(지원시설, 거점시설포함)관리, 방문객관리, 서비스관리,

안전관리, 자연환경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함

나.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관리에 역점을 두고 운영체계 수립

- 탐방시설관리 : 탐방로상에 위치한 탐방시설의 관리
- 탐방객관리 : 직·간접적 이용제한
- 서비스관리 : 탐방객에 대한 직·간접적 활동 보조
- 안전관리 : 탐방로에 대한 안전관리
- 자연환경관리 :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 후 기존 훼손지에 대한 복원관리

5. 편입토지 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03	유	11,462	11,462		환경부	
2		108-2	구	390	390		농림축산식품부	
3		109-2	유	106	106		농림축산식품부	
4		110-3	유	18,283	18,283		환경부	
5		111-2	유	1,160	1,160		농림축산식품부	
6		111-3	유	1,729	135		환경부	
7		113-1	유	350	252		농림축산식품부	
8		115-1	유	2,585	2,585		환경부	
9		115-2	유	142	142		농림축산식품부	
10		244-2	유	2,909	2,047		환경부	
11		246-3	구	195	188		농림축산식품부	
1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3	유	140,929	52,594		환경부	
13		24-1	유	4,704	4,696		농림축산식품부	
14		25-1	유	820	690		농림축산식품부	
15		30-2	유	225	177		농림축산식품부	
16		31	유	24,134	7,765		환경부	
17		36-2	유	93	93		환경부	
18		38-1	유	333	287		환경부	
19		38-3	유	291	291		농림축산식품부	
20		62-1	유	304	296		농림축산식품부	
21		63	유	37,771	9,778		환경부	
22		71	유	410	12		농림축산식품부	
23		73	유	26,719	8,553		환경부	
24		76-10	유	753	39		농림축산식품부	
25		78-3	유	591	29		농림축산식품부	
26		78-4	구	2,866	39		농림축산식품부	
27		83	유	34,463	11,252		환경부	
28		93	유	38,327	11,372		환경부	
29		113	유	43,928	12,394		환경부	
30		116	도	344	344		국	
31		123	유	35,573	35,573		환경부	
32		124	유	1,111	1,111		농림축산식품부	
33	163	유	31,061	1,389		환경부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34		193-1	유	1,494	1,401		환경부		
35		193-10	도	119	119		농림축산식품부		
36		465-5	유	5,438	3,119		농림축산식품부		
37		465-8	유	460	454		농림축산식품부		
38		465-22	제	46	46		농림축산식품부		
39		465-23	제	46	46		농림축산식품부		
40		465-24	제	43	43		농림축산식품부		
41		465-25	제	50	50		농림축산식품부		
42		465-26	제	30	30		농림축산식품부		
43		465-27	제	43	43		농림축산식품부		
44		465-28	제	36	36		농림축산식품부		
45		465-29	제	36	36		농림축산식품부		
46		465-30	제	86	86		농림축산식품부		
47		465-31	제	145	145		농림축산식품부		
48		1562-2	도	3,752	846		건설부		
49		1565-20	도	149	23		농림축산식품부		
계				477,034	5,003				

6. 기타 본 사업에 대한 관계도서 및 세부사업계획은 거창군 환경과 거창창포원(055-940-8872)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감도

<조감도>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9.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1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76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1	20090401	20201209	마을 뒤에 대밭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26-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부산2길 27-9	20090401	20201209	옛날 무학대사가 지형이 가마솥설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286-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467-27	20090401	20201209	행정구역명 장팔리가 반영된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175-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하곡2길 148-51	20090401	20201209	하곡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79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2길 192-8	20190919	20201209	갈지길을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부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법인 청산종결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3.

거창군수

1. 공고기간 : 2020. 12. 3. ~ 12. 18. (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온천우선이용권자	주 소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비 고
(주)윤성 대표 이○○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47	온천법 제21조의 사유에 따른 처분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청산종결간주

3. 청문실시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055-940-3443, FAX 055-940-3409)
- 일 시 : 2020년 12월 21일(월) 14:00
- 장 소 : 거창군청 중회의실(본관 지하1층)
- 의견제출 : 2020년 12월 18일 까지(서면 또는 구술 등)

4. 기타사항

-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
- 기타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055-940-3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1-16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1-16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7.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창읍 대동리 12-36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 50132)

3.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비고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기점	종점		
교통 시설	(중로1-16호선) 한들교 개설공사	거창	대동	중로	1	16	194	20	10,608	거창읍 대동리 12-36	거창읍 대평리 440-11	경고465호 ('92.12.24.)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2)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비고
계					10,608	-	
1	거창읍 대평리	440-11	채	7,586	1,890	거 창 군	
2	거창읍 대평리	440-3	전	3,415	578	거 창 군	
3	거창읍 대평리	440-4	임	3,937	1,412	거 창 군	
4	거창읍 대평리	12	천	247,805	3,034	국토교통부	
5	거창읍 대동리	2	천	190,071	3,677	국토교통부	
6	거창읍 대동리	12-36	도	1,348	17	국토교통부	

7.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 FAX,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제출 주소 및 연락처

- ▶ 우편번호/주소 :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
- ▶ FAX : 055-940-3579
- ▶ E-mail : njtman@korea.kr

의 견 서 (제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거창군 공고 제2020 - 1574호

군도25호선(보광,성북)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주상면 남산리, 웅양면 동호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군도25호선(보광,성북)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8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군도25호선(보광,성북)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웅양면 동호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8km, B=8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85-1번지, 주상면 남산리 840-7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사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내용	
				m ²	m ²							
1	웅양면	산7 7-1	구	413.0	413.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성북1 구간
2	웅양면	385 -1	답	693.0	272.0		경심제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226				"
3	웅양면	384 -2	도	185.0	100.0		유동출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04				"
4	웅양면	384 -4	답	775.0	775.0		김경복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37				"
5	웅양면	392	답	112.0	112.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6	웅양면	400 -5	임	569.0	307.0		이태영					"
7	웅양면	400 -4	답	1,529.0	888.0		이정균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09				"
8	웅양면	401 -1	답	334.0	263.0		김한조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49				"
9	웅양면	402 -1	답	305.0	232.0		김한식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56				"
10	웅양면	403 -1	답	424.0	266.0		이현용	부산광역시북구 덕천로259번길5, 1동110호(만덕동 ,현대레포션)				"
11	웅양면	404 -1	답	348.0	245.0		김량경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성북2길 19-5				"
12	웅양면	405	답	803.0	197.0		김량경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성북2길 19-5				"
13	웅양면	406 -8	답	1,074.0	458.0		이장우	울산광역시남구 대암로26, 204동1404호(신 정동,신성미소지 움아파트)				"
14	웅양면	406 -2	묘	280.0	229.0		이덕화					"
15	웅양면	408	답	734.0	734.0		이종환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281				"
16	웅양면	141 0	구	260.5	41.0		농림축산 식품부					"
17	웅양면	139 9-1	답	1,183.6	235.0		김명숙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성동로 243				"
18	웅양면	산7 6-1	구	1,884.0	125.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19	웅양면	382 -1	구	21.0	21.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20	웅양면	382 -4	답	534.0	534.0	3/15	임승호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4-10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내용	
				m ²	m ²							
20	영양면	382-4	답	534.0	534.0	3/15	임영길	부산광역시강서구신호동205-1신호월더하임아파트108-504				성북1구간
						3/15	임해태	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3가318-2				"
						3/15	임춘삼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부곡리805-1월산마을11단지주공아파트1102-702				"
						3/15	임명호	부산광역시남구문형동777-21				"
21	영양면	384-5	답	2,473.0	2,237.0		김호철	부산 영도구청학동 2동 402				"
22	영양면	1299	구	21,764.0	307.0		농림축산식품부					"
23	영양면	400-1	임	66.0	66.0		이태영					"
24	영양면	산65-2	임	913.0	488.0		이강욱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654-11				"
25	영양면	406-7	답	1,748.0	708.0		최일숙	경상남도거창군웅양면동호리 301				"
26	영양면	406-6	구	54.0	36.0		이덕화					"
27	영양면	409-1	구	408.0	115.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
28	영양면	409-4	답	271.0	24.0		이현용	부산광역시북구덕천로259번길5,1동110호(만덕동,현대레포션)				"
29	영양면	1307	도	1,055.0	197.0		국토교통부					"
30	영양면	산60-7	임	1,343.0	75.0		이내영	부산 동래구연산동 1941-39				"
31	영양면	1306	도	937.0	60.0		국토교통부					"
32	영양면	1399-1	답	1,183.6	585.0		김명숙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성동로 243				성북2구간
33	영양면	1400	답	1,123.0	44.0		김명숙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성동로 243				"
34	영양면	1399	답	847.1	73.0		김명숙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성동로 243				"
35	영양면	1397	답	1,932.0	51.0		이문기	경상남도거창군웅양면동호리 289				"
36	영양면	1409	도	1,905.5	465.0		농림축산식품부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내용	
				m ²	m ²							
37	웅양면리	1407	구	649.1	112.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성북2 구간
38	웅양면리	산85	임	43,564.0	37.0		이승원	대전유성구노은 동520-1 열매마을아파트8 단지805-502				"
39	웅양면리	산86	임	1,787.0	10.0		이승원	대전유성구노은 동520-1 열매마을아파트8 단지805-502				"
40	웅양면리	산87	임	4,264.0	2.0		웅양성북 마을회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07				"
41	웅양면리	1298-2	구	943.0	115.0		농림축산 식품부					"
42	웅양면리	1280	도	1,586.0	249.0		농림축산 식품부					"
43	웅양면리	1278	구	1,999.0	112.0		농림축산 식품부					"
44	웅양면리	1277	도	528.0	39.0		농림축산 식품부					"
45	웅양면리	489-9	답	1,149.0	715.0		연안이씨 설천제중 중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866				"
46	웅양면리	1274	구	6,023.0	289.0		농림축산 식품부					"
47	웅양면리	487-4	과	1,895.0	481.0		이기웅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성북2길 8				"
48	웅양면리	487-3	답	1,641.0	481.0		강민숙	경상남도김해시 울하2로164,130 4동902호 (울하동,울현마을 주공13단지아파 트)				"
49	웅양면리	472	답	1,250.0	764.0		김진호	부산광역시해운 대구반여동1192 -3 일동아파트105- 1304				"
50	웅양면리	471-9	답	1,430.0	335.0		서석만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42번길 5(봉곡동)				"
51	웅양면리	1256-1	도	3,887.0	867.0		농림축산 식품부					"
52	웅양면리	산60-7	임	1,343.0	122.0		이내영	부산 동래구 연산동 1941-39				"
53	웅양면리	1306	도	837.0	224.0		국토교통 부					"
54	웅양면리	산60-4	구	606.0	46.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55	웅양면리	428-1	구	164.0	25.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내용	
				m ²	m ²							
56	영양면 영양리	139 6-1	답	60.6	42.0		이기웅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성북2길 8				성북2 구간
57	영양면 영양리	139 6	답	1,589.5	1,227.0		이기웅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성북2길 8				"
58	영양면 영양리	139 5-1	답	942.6	513.0	1/2	이해철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55-11-303				"
						1/2	이영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61 동원아파트 105-1101				"
59	영양면 영양리	139 5	답	1,725.6	398.0		이두환	경기도고양시일 산동구탄중로416 907동903호(중 산동,중산마을)				"
60	영양면 영양리	139 4	답	1,537.1	147.0		이현수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동호리 481				"
61	영양면 영양리	335 -6	답	906.0	398.0		이명기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동호리 344				"
62	영양면 영양리	503 -1	답	2,160.0	524.0		이응혁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성북2길 47-19				"
63	영양면 영양리	489 -6	답	1,055.0	158.0		이응혁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성북2길 47-19				"
64	영양면 영양리	489 -7	답	1,229.0	213.0		이응혁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성북2길 47-19				"
65	영양면 영양리	489 -8	답	1,387.0	425.0		연안이씨 설천제중 중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동호리 866				"
66	영양면 영양리	488 -1	답	1,727.0	12.0		이명기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동호리 344				"
67	영양면 영양리	125 6-3	도	783.0	80.0		농림축산 식품부					"
68	영양면 영양리	487 -5	답	1,859.0	379.0		이명기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동호리 344				"
69	영양면 영양리	487 -2	답	1,204.0	412.0		김양호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동호리 350				"
70	영양면 영양리	487 -1	과	1,437.0	590.0		이기웅	경상남도 거창군 영양면 성북2길 8				"
71	영양면 영양리	125 6-4	구	89.0	33.0		농림축산 식품부					"
72	영양면 영양리	473	답	1,425.0	584.0		장현동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7 주공아파트 102동 605호				"
73	영양면 영양리	125 6-2	구	1,142.0	85.0		농림축산 식품부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내용	
				m ²	m ²							
74	예양면 예양리	471-6	답	1,469.0	76.0		이운연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273번 길 39-38(봉황동)				성북2 구간
75	예양면 예양리	471-7	답	1,914.0	160.0		이운연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273번 길 39-38(봉황동)				"
76	예양면 예양리	471-8	답	1,594.0	229.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77	예양면 예양리	471-11	답	1,054.0	258.0		연안이씨 쌍청당공파 종중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809				"
78	예양면 예양리	471-12	답	1,306.0	567.0		연안이씨 쌍청당공파 종중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809				"
79	예양면 예양리	125 6-5	도	552.0	70.0		농림축산 식품부					"
80	예양면 예양리	127 4-1	구	559.0	16.0		농림축산 식품부					"
81	예양면 예양리	124 8-1	구	2,102.0	72.0		농림축산 식품부					"
82	예양면 예양리	465-1	답	1,294.0	33.0		김판용	서울특별시금천 구시흥대로26길4 9, 606호(시흥동,리 츠펠리스)				"
83	예양면 예양리	333	도	1,931.0	57.0		농림축산 식품부					"
84	예양면 예양리	464-8	답	2,325.0	252.0		이종환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298				"
85	예양면 예양리	464-7	답	2,069.0	219.0		이현수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481				"
86	예양면 예양리	464-6	답	1,770.0	224.0		이명기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23				"
87	예양면 예양리	464-5	답	958.0	142.0		홍병기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421				"
88	예양면 예양리	464-4	답	536.0	85.0		연안이씨 쌍청당공파 종중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809				"
89	예양면 예양리	464-3	답	507.0	76.0	1/2	이광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778				성북2 구간
						1/2	이주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760				"
90	예양면 예양리	464-2	답	511.0	6.0		이조현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775				"
91	예양면 예양리	464-11	답	96.0	66.0		국토교통 부					"
92	예양면 예양리	464-9	답	2,235.0	2.0		국토교통 부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내용	
				m ²	m ²							
93	주상면 남산리	840 -7	답	35.0	35.0		백영식	대구광역시수성 구달구벌대로645 길22, 102동2002호(매 호동,시지우방하 이츠)				보광지 구
94	주상면 남산리	834 -7	답	102.0	102.0		백동욱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상림리771 상동주공아파트1 02-1003				"
95	주상면 남산리	133 9	도	1,369.0	202.0		국토교통 부					"
96	주상면 남산리	835 -7	도	17.0	8.0		거창군					"
97	주상면 남산리	835 -1	도	136.0	10.0		백용주					"
98	주상면 남산리	836 -4	답	1,330.0	1,330.0		백수중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015				"
99	주상면 남산리	835 -8	답	345.0	345.0		백동욱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상림리771 상동주공아파트1 02-1003				"
100	주상면 남산리	831 -4	답	683.0	683.0		백영식	대구광역시수성 구달구벌대로645 길22, 102동2002호(매 호동,시지우방하 이츠)				"
101	주상면 남산리	835 -4	도	8.0	4.0		거창군					"
102	주상면 남산리	831 -3	도	14.0	14.0		거창군					"
103	주상면 남산리	132 5	구	54,533. 0	1,144.0		농림축산 식품부					"
104	주상면 남산리	831 -1	도	36.0	36.0		백학술					"
105	주상면 남산리	834 -6	답	68.0	68.0		백동욱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상림리771 상동주공아파트1 02-1003				"
106	주상면 남산리	834 -4	도	243.0	243.0		거창군					"
107	주상면 남산리	108 3-1	답	196.0	196.0		백수중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015				보광 지구
108	주상면 남산리	834 -2	답	580.0	580.0		이문자	경상남도 거창읍 대평리 567 남광빌라 706호				"
109	주상면 남산리	108 1-3	답	14.0	14.0		수원백씨 출당공파중 거창중종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019				"
110	주상면 남산리	108 4-1	도	33.0	33.0		거창군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내용	
				m ²	m ²							
111	주상면 남산리	108 4-2	답	56.0	56.0		백원의	서울특별시 양 천구 신월동 560-1 우당아파 트 101-604				보광 지구
112	주상면 남산리	108 1-2	답	5.0	5.0		수원백씨 춘당파중 거창종	경상남도 거창 군 주상면 남산 리 1019				"
113	주상면 남산리	108 5-1	도	66.0	66.0		거창군					"
114	주상면 남산리	108 5	답	291.0	291.0		백원의	서울특별시 양 천구 신월동 560-1 우당아파 트 101-604				"
115	주상면 남산리	834 -5	도	20.0	20.0		거창군					"
116	주상면 남산리	134 0	도	2,317.0	56.0		국토교통 부					"
117	주상면 남산리	108 6-1	답	128.0	128.0	1/2	백승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거열로8길 44, 102동1004호(현 대아파트)				"
						1/2	백동욱	경상남도 거창 군 거창읍 상동7 길 15-13, 2층				"
118	주상면 남산리	108 7-1	대	14.0	14.0		수원백씨 의립의적중 형제중	경상남도 거창 군 주상면 남산 리 1087				"
119	주상면 남산리	110 3-1	답	130.0	130.0		한호균	경상남도 거창 군 주상면 남산 리 1069				"
120	주상면 남산리	110 5	전	2,261.0	474.0		백영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거창대로 29, 1303호(참좋은아 파트)				"
121	주상면 남산리	110 6-2	전	425.0	425.0		백동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거열로7길 39, 104동1106호(상 동주공아파트)				"
122	주상면 남산리	110 9-1	임	320.0	320.0		백한기	사정				"
123	주상면 남산리	135 5	구	463.0	463.0		국토교통 부					"
124	주상면 남산리	110 1	답	350.0	350.0		백승호	세종특별 자치 시 연기면 당산로 235-14, 203호				"
125	주상면 남산리	111 0	답	307.0	307.0		백인기	사정 (거창읍 학리)				"
126	주상면 남산리	110 8-1	전	398.0	398.0		백승호	세종특별 자치 시 연기면 당산로 235-14, 203호				"
127	주상면 남산리	111 1	답	152.0	152.0		백한기	사정				"
128	주상면 남산리	산7 2-1	임	1,271.0	1,271.0	1/2	백동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상림리771 상동주공아파트 102-1003				"
						1/2	백점분	경상남도 거창 군 주상면 상보 광길 7				"
129	주상면 남산리	111 2	전	208.0	208.0		백명석					"

거창군 공고 제2020 - 1575호

**신원 양지(204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신원면 양지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신원 양지(204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신원 양지(204호선)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74km, B=6.5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산 133-2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사

순번	동,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신원면 양지리	산133-2	임	9,421.0	31	엄복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344	
2	"	1346	대	126	9	조창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797 당감주공아파트 102동 207호	
3	"	1459	도	1,342.0	955	국유지	국건설부	
4	"	1370	임	26,457	169	전석내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805-1	
5	"	1369	전	225	173	엄태구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344	
6	"	1368	전	1,253	882	엄재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4 꿈마을아파트 707-504	
7	"	1367	답	3,005	1,439	엄재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4 꿈마을아파트 707-504	
8	"	1366	답	1,481	344	엄재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4 꿈마을아파트 707-504	
9	"	1424	천	181,003	6,007	국유지	국건설부	
10	"	1462	도	198	41	국유지	국건설부	
11	"	1398	임	238	233	신행범		
12	"	1395	답	38	38	신범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37	
13	"	1394	천	1,759	729	이상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93-8(여좌동)	
14	"	1461	도	344	9	국유지	국건설부	
15	"	933-1	답	55	7	신용선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539-1	
16	"	928-2	도	63	60	신추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37	
17	"	927-2	도	2	2	국유지	거창군	
18	"	914-1	천	258	82	신용덕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536	
19	"	914-2	도	20	20	국유지	거창군	
20	"	915	천	23	22	홍대주		
21	"	916-2	도	10	10	국유지	거창군	
22	"	916-1	천	112	75	신용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73	
23	"	916-3	도	17	17	국유지	거창군	
24	"	922-4	답	7	7	신종현		
25	"	922-3	도	241	241	국유지	거창군	
26	"	919-1	답	172	14	신오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73	
27	"	921	답	116	116	이덕재		
28	"	824-1	답	1,940	12	신오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73	
29	"	894	답	227	74	신인재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27	

순번	동,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30	신원면 양지리	824- 3	답	2,626	9	신인재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27	
31	"	886- 1	답	132	112	정판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547-7	
32	"	824- 6	답	2,356	34	정판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547-7	
33	"	886- 4	답	336	11	정판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547-7	
34	"	886- 2	도	20	9	국유지	거창군	
35	"	747- 2	도	3	3	국유지	거창군	
36	"	746- 2	도	83	83	국유지	거창군	
37	"	887- 2	도	73	55	국유지	거창군	
38	"	887- 1	답	1,084	12	신창범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7길 21, 103동 301호 (경남아너스빌)	
39	"	888- 1	답	698	30	정정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43-9	
40	"	888- 2	도	36	37	신양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55	
41	"	745- 2	도	69	69	국유지	거창군	
42	"	889- 2	도	50	24	신양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55	
43	"	828- 1	답	380	11	정정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43-9	
44	"	828- 2	답	2,604	195	신경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490	
45	"	828- 3	답	529	65	신무범 외2인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28	
46	"	828- 4	답	559	47	신용덕	대구 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37-6	
47	"	828- 5	구	166	45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48	"	828- 6	도	70	29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49	"	828- 8	대	288	121	국유지	거창군	
50	"	311- 4	도	101	101	신위성		
51	"	311- 5	도	238	184	국유지	경상남도	
52	"	1433	도	89	10	국유지	국건설부	
53	"	312- 1	도	13	13	신위성		
54	"	312- 2	도	66	10	신위성		
55	"	232- 2	도	1,117	5	신종한		
56	"	321- 1	도	1,092	52	국유지	거창군	
57	"	1348	대	248	4	엄차술		
58	"	1347	대	241	241	엄봉이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343	
59	"	1359- 1	답	3,220	209	홍기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22번길 34,528동 2106호(정자동, 백설마을삼환나우빌아파트)	

순번	동,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60	신원면 양지리	1359-3	도	152	84	홍석희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345
61	"	1362-1	천	241	4	엄태구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344
62	"	1364	답	552	434	엄영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344
63	"	1330-5	임	453	58	신행범		
64	"	1330-4	도	403	45	신행범		
65	"	1330-1	임	5167	593	한덕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57, 103동410호 (현대아파트)	
66	"	1402-1	답	1130	419	홍봉희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345
67	"	1404-5	답	1962	166	홍봉희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345
68	"	1397	임	136	28	홍승갑		
69	"	755-1	답	1880	289	신도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37
70	"	755-2	답	1347	251	이상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93-8(여좌동)	
71	"	산129	임	17752	23	홍연조 외1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2길 11-4(창동)	
72	"	산130	임	6645	271	거창신씨 극회공중 중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55
73	"	931	천	1005	570	박중식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131
74	"	1435	도	7934	2,246	국유지	국건설부	
75	"	764-1	답	1765	201	신용덕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536
76	"	927-3	도	18	18	국유지	거창군	
77	"	764-2	답	750	189	박중식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131
78	"	927-4	도	54	54	국유지	거창군	
79	"	764-3	도	638	32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80	"	922-2	도	26	26	국유지	거창군	
81	"	922-1	답	78	78	신종현		
82	"	922-5	답	30	30	신종현		
83	"	764-7	답	2992	369	신종현		
84	"	산56	임	16463	796	신경범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사로39, 103동1405호 (안락동, 동래화목타운)	
85	"	920-1	도	10	10	국유지	거창군	
86	"	920-2	전	63	34	신용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73
87	"	산57	임	11207	1,190	김재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218-1 광장극동 아파트 4동 1101호	
88	"	885-1	전	655	220	신용균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539
89	"	885-2	도	69	69	신두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57

순번	동,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90	신원면 양지리	산63	임	14281	483	거창신씨 서령공파 구수회중 중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41
91	"	884	전	294	45	신경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490
92	"	747- 1	전	1052	30	신경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490
93	"	746- 1	전	673	175	형순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39, 105동601호 (상동주공아파트)
94	"	829	답	1068	101	형순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39, 105동601호 (상동주공아파트)
95	"	745- 1	도	240	68	신명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26-5
96	"	744- 1	전	1766	15	한덕남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1길 16-6
97	"	253- 2	도	69	66	삼포양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55
98	"	254- 4	도	66	66	신무범 외2인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28
99	"	254- 3	도	73	73	신정범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494
100	"	262- 3	대	76	14	유옥숙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9
101	"	262- 2	도	59	10	국유지	거창군
102	"	263	대	226	16	신이분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남양동20에스티엑 스칸 104동 503호
103	"	1440	구	176	176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104	"	1434	도	20	3	국유지	국건설부
105	"	311- 7	도	15	15	신위성	
106	"	311- 2	도	212	29	신위성	
107	"	264- 1	도	48	48	국유지	경상남도
108	"	310- 2	도	195	8	신경범	
109	"	264	대	200	42	유옥숙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2
110	"	265- 3	도	33	33	신두성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5
111	"	265- 1	대	520	38	신석범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93-88
112	"	265- 2	도	10	10	신두성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5
113	"	266	대	148	32	신석범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93-88
114	"	266- 1	도	23	23	신두성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5
115	"	309- 5	도	24	17	국유지	경상남도
116	"	309- 6	도	19	10	국유지	거창군
117	"	309- 2	도	122	9	신경범	

거창군 공고 제2020 - 1576호

면도 101호선(상개명, 둔기)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고제면 개명리, 봉산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면도 101호선(상개명, 둔기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면도101호선(상개명,둔기)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봉산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2km, B=8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553-3번지, 봉산리 1013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사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비고
	거창군		공부	현실			성명	주소	
1	고제면 개명리	547-1	도		2,461	257	국(건설부)		
2	고제면 개명리	553-3	답		1,174	9	윤진호	인천 남동구 간석로66번길 28, 801호	
3	고제면 개명리	649-2	답		161	51	라용훈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학리 352	
4	고제면 개명리	649-9	도		615	444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649-1 0	답		357	213	안재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상개명길 73	
6	고제면 개명리	649-1 4	도		264	123	국(건설부)		
7	고제면 개명리	649-8	답		1,203	13	김진억	대전 유성구 배울2로 114, 1104동 1002호	
8	고제면 개명리	649-1 3	도		529	232	국(건설부)		
9	고제면 개명리	553-6	답		635	245	안재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상개명길 73	
10	고제면 개명리	553-1	답		952	255	김성환 외1인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545-4	
11	고제면 개명리	산172	임		4,897	1,933	김성환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545-4	
12	고제면 개명리	산172 -2	도		365	297	거창군		
13	고제면 개명리	2219	도		456	295	국(건설부)		
14	고제면 개명리	2191	구		27,309	3,775	국(농수산 부)		
15	고제면 개명리	647	답		106	97	양판돌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47	
16	고제면 개명리	627-2	도		165	152	거창군		
17	고제면 개명리	627-1	답		743	380	서종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22	
18	고제면 개명리	627-3	답		103	88	거창군		
19	고제면 개명리	산172 -1	임		5,746	114	하인술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10-3	
20	고제면 개명리	626	전		516	46	강종권 외1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하동 327-4	
21	고제면 개명리	625-1	답		165	56	서종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22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비고
	거창군		공부	현실			성명	주소	
22	고제면 개명리	625-3	도		69	69	양옥수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62	
23	고제면 개명리	624-3	도		23	23	거창군		
24	고제면 개명리	624-1	전		410	31	신두치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57	
25	고제면 개명리	623-4	도		3	3	거창군		
26	고제면 개명리	623-1	답		1,339	63	김배근 외2인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6-49 영풍빌라 가동 101호	
27	고제면 개명리	623-3	도		13	1	거창군		
28	고제면 개명리	630-2	도		36	4	거창군		
29	고제면 개명리	630-1	도		99	15	거창군		
30	고제면 개명리	630-4	전		179	1	서종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22	
31	고제면 개명리	630-5	전		357	305	임말임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60	
32	고제면 개명리	631	대		195	48	이현호		
33	고제면 개명리	628-1	도		30	30	거창군		
34	고제면 개명리	628-2	묘		122	4	강준룡	농산리	
35	고제면 개명리	625-4	답		40	10	서종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22	
36	고제면 개명리	625-2	도		23	12	양옥수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62	
37	고제면 개명리	624-2	도		10	10	거창군		
38	고제면 개명리	623-2	도		76	76	거창군		
39	고제면 개명리	630-3	도		26	26	거창군		
40	고제면 개명리	629-1	답		1,550	485	서종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22	
41	고제면 개명리	2197	도		479	148	국(건설부)		
42	고제면 개명리	364	답		2,486	814	안재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57	
43	고제면 개명리	361	답		1,544	302	노영효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584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비고
	거창군		공부	현실			성명	주소	
44	고제면 개명리	366	임		1,412	28	소창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57	
45	고제면 개명리	359	전		159	105	유양문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1	
46	고제면 개명리	358	전		99	11	유양문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1	
47	고제면 개명리	360	전		1,091	741	노영효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584	
48	고제면 개명리	357	임		139	54	유양문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1	
49	고제면 개명리	356	전		235	38	하태진		
50	고제면 개명리	355	답		635	78	소창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57	
51	고제면 개명리	368	답		3,818	184	소성욱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57	
52	고제면 개명리	354	임		327	65	김초안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87	
53	고제면 개명리	353	답		337	111	노현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38-5	
54	고제면 개명리	351	답		172	107	소창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57	
55	고제면 개명리	373-2	답		3,104	186	조옥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316-123	
56	고제면 개명리	374	답		2,212	446	이신복	경남 거창군 고제면 상개명길 74	
57	고제면 개명리	375-2	답		1,507	93	이신복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26-1	
58	고제면 개명리	350	임		516	372	유병목 외2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64-11	
59	고제면 개명리	376	답		2,813	1,017	김진국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25-1	
60	고제면 개명리	375-1	답		2,241	649	나광훈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00-4 마-306	
61	고제면 개명리	383	답		2,618	1,226	배정진	부산 동래구 거제동 766-122	
62	고제면 개명리	412	답		172	108	김상식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32	
63	고제면 개명리	411	답		169	100	배정진	부산 동래구 거제동 766-122	
64	고제면 개명리	384	답		2,013	2	장진국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36	
65	고제면 개명리	409	답		1,127	80	유병호	경남 거창군 고제면 상개명길 110-36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비고
	거창군		공부	현실			성명	주소	
66	고제면 개명리	408	전		3,230	8	진동춘	경남 거창군 고제면 상개명길 110-36	
67	고제면 개명리	407	전		139	130	장강현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36	
68	고제면 개명리	406	전		595	460	배정진	부산 동래구 거제동 766-122	
69	고제면 개명리	483	전		3,214	817	장기수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63	
70	고제면 개명리	484	전		821	377	이희익	경기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92-2	
71	고제면 개명리	488-1	도		45	34	김진호		
72	고제면 개명리	488	전		272	22	김진호		
73	고제면 개명리	487-1	도		40	40	거창군		
74	고제면 개명리	496	전		137	63	배영일		
75	고제면 개명리	496-1	도		8	8	배영일		
76	고제면 개명리	487	전		277	163	이희익	경기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92-2	
77	고제면 개명리	497	전		221	45	배정진	부산 동래구 거제동 766-122	
78	고제면 개명리	486-1	도		22	22	배정진	부산 동래구 거제동 766-122	
79	고제면 개명리	497-1	도		130	32	배정진	부산 동래구 거제동 766-122	
80	고제면 개명리	2195	도		998	129	국(건설부)		
81	고제면 개명리	486	임		318	140	배정진	부산 동래구 거제동 766-122	
82	고제면 개명리	산216	임		6,446	1,647	전극배	서울 강동구 고덕동 499 114-508	
83	고제면 개명리	400	답		73	1	하명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65	
84	고제면 개명리	399	임		1,091	271	배판암		
85	고제면 개명리	398	전		579	425	정종수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57	
86	고제면 개명리	22	답		1,825	1,247	시나셀파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57	
87	고제면 개명리	23	답		1,755	511	배숙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5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비고
	거창군		공부	현실			성명	주소	
88	고제면 개명리	24	전		717	117	배숙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상개명길 110-43	
89	고제면 개명리	25	전		1,587	282	류재욱	대구 달서구 용산서로 21, 101동602호	
90	고제면 개명리	산217 -1	임		111,273	404	국(산림청)		
91	고제면 개명리	27	전		1,012	93	박동기	경남 거창군 고제면 상개명길 110-15	
92	고제면 개명리	26	답		1,964	1,036	배정부 외2인	부산 서구 괴정2동 산6	
93	고제면 개명리	28	답		995	378	배정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3	
94	고제면 개명리	18	답		466	176	이점이	대구 북구 검단동 1083-1	
95	고제면 개명리	17	전		361	201	이점이	대구 북구 검단동 1083-1	
96	고제면 개명리	28-3	도		103	49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97	고제면 개명리	28-1	전		462	53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98	고제면 개명리	29-3	임		31	31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99	고제면 개명리	17-1	도		39	33	박외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47	
100	고제면 개명리	16-2	도		120	17	김도환	서울 동작구 상도로 15나길 22 (상도동)	
101	고제면 개명리	29-1	과		1,321	197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102	고제면 개명리	12-2	전		687	90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103	고제면 개명리	16	전		922	659	김도환	서울 동작구 상도로 15나길 22 (상도동)	
104	고제면 개명리	16-1	도		118	28	김도환	서울 동작구 상도로 15나길 22 (상도동)	
105	고제면 개명리	12-3	도		103	99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106	고제면 개명리	13-2	답		2,648	21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107	고제면 개명리	12-4	전		99	99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108	고제면 개명리	산210 -9	목		399	49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상개명길 99	
109	고제면 개명리	12-1	전		820	256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비고
	거창군		공 부	현실			성명	주소	
110	고제면 개명리	산210 -1	목		10,970	2,442	신동욱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4-61, 101동 1203호	
111	고제면 개명리	11-2	임		624	503	신동욱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4-61, 101동 1203호	
112	고제면 개명리	11	임		249	19	배은실	서울 관악구 난곡로35길 28-7, 다동 506호	
113	고제면 개명리	산210 -7	목		592	44	배은실	서울 관악구 난곡로35길 28-7, 다동 506호	
114	고제면 개명리	산207	임		51,174	6	이점순	경북 김천시 개령면 오송안길 42-16	
115	고제면 개명리	10	답		1,547	234	신동욱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4-61, 101동 1203호	
116	고제면 개명리	산209	임		25,289	374	배정진	부산 동래구 거제동 766-122	
117	고제면 개명리	산203	임		29,058	1,363	배정덕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476	
118	고제면 개명리	산212 -1	임		20,169	2,307	박종하	궁항리	
119	고제면 개명리	산212 -4	임		3,434	648	이재천 외1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7-36 삼성쉐르빌 에이-402	
120	고제면 개명리	산195 -3	임		16,442	721	이재천 외1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7-36 삼성쉐르빌 에이-402	
121	고제면 개명리	507	답		595	24	이희익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501	
122	고제면 개명리	2193	도		89	89	국(건설부)		
123	고제면 개명리	507-1	전		420	18	이희익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92-2	
124	고제면 개명리	산213	임		198	71	백남의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25	고제면 봉산리	산138 -1	임		58,512	45	강우석 외1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길 40, 102동 302호	
126	고제면 봉산리	1013	전		1,297	3	정순애	대구 중구 남산로4길 91, 101동 1402호	
127	고제면 봉산리	2511	도		1,340	309	국(건설부)		
128	고제면 봉산리	1014	임		1,245	569	하병두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68	
129	고제면 봉산리	1015	전		119	7	이학노		
130	고제면 봉산리	1016	임		463	129	표창수	전남 춘천시 효자동 302-14	
131	고제면 봉산리	1002	과		2,568	48	하병두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68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비고
	거창군		공부	현실			성명	주소	
132	고제면 봉산리	1005	전		468	386	이희응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서면 보성리 485-2 104호	
133	고제면 봉산리	1017	전		1,210	45	정경화	대전 중구 대흥동 452-65	
134	고제면 봉산리	1004	전		334	61	신수연	대구 동구 신천동 425-12	
135	고제면 봉산리	2497- 5	도		1,957	152	국(농림수 산부)		
136	고제면 봉산리	산104	임		6,645	981	조래균	경남 창원시 사림동 51-4	
137	고제면 봉산리	1020	전		1,029	79	박동제	경남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477-5	
138	고제면 봉산리	2510	도		1,580	202	국(건설부)		
139	고제면 봉산리	1025	전		2,089	16	하병두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68	
140	고제면 봉산리	1024	전		495	397	하병두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68	
141	고제면 봉산리	1023	묘		541	428	이준화	경남 양산시 평산동 568 봉우아파트 208-2007	
142	고제면 봉산리	1022	전		671	162	이일영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12	
143	고제면 봉산리	1028	전		2,296	1,079	안락사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801	
144	고제면 봉산리	1036	임		6,542	417	강계형		
145	고제면 봉산리	1029	답		1,852	715	공재철 외1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둔기길 51-6	
146	고제면 봉산리	985	임		612	31	구본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235	
147	고제면 봉산리	983	임		4,271	265	강용이 외1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099	
148	고제면 봉산리	983-2	임		10,427	2,342	조래균	창원시 사림동 51-4	
149	고제면 봉산리	982	답		324	132	이일영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12	
150	고제면 봉산리	2497	구		9,485	890	국(농림수 산부)		
151	고제면 봉산리	981	전		608	536	이일영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12	
152	고제면 봉산리	1032	전		450	105	김재연	서울 중구 신당동 285-81	
153	고제면 봉산리	840	전		1,047	543	이일영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12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예정 면적	소 유 자		비 고
	거창군		공 부	현 실			성 명	주 소	
154	고제면 봉산리	841	전		106	65	강준형		
155	고제면 봉산리	940-6	도		1,255	21	경상남도		
156	고제면 봉산리	940-3	도		1,560	122	정화암		
157	고제면 봉산리	935-1	도		382	40	경상남도		
158	고제면 봉산리	940-4	도		10	10	경상남도		
159	고제면 봉산리	2497- 6	도		1,620	321	국(농림수 산부)		
160	고제면 봉산리	983-1	도		161	104	경상남도		
161	고제면 봉산리	2494- 2	임		98	45	국(국토해 양부)		
162	고제면 봉산리	983-3	임		2,295	25	백판출 외2인	경남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2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안 제7조 제8조)
- 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22조)
- 다. 사용료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안 별표 3)
- 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 확대 (안 별표 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 입법예고기간 : 2020. 12. 9. ~ 2020. 12. 29. / 20일간

7.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0. 12. 29.(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우) 50132
 - 전화 : 055)940-8731, FAX: 055)940-872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활용실태를 수시로”를 “이용실태를 분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 사용일 7일 전

2.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청 : 사용일 3일 전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을 각각 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기존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3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2. 국민체육센터 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

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중 100분의 50 감경 대상을 별지와 같이 하고, 비고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거창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u>」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체육시설</u>”이란 <u>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거창군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을 말한다.</u></p> <p>2. “<u>시설의 사용</u>”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u>사용자</u>”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상설 스포츠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u>사용료</u>”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u>관람자</u>”란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u>관람료</u>”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u>관람권</u>”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p>	<p><삭 제></p>

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12. 삭제<2018.10.31.>

1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삭 제>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호 ~ 3호 (생략)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③ (생략)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1호~3호 <삭제>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
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
일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신 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
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
하는 체육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용일 7일 전

2.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 사용일 3일 전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7일 이
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
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
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
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
하는 체육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신 설>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삭 제>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제15조제1항관련)

감경대상	감경률
<p>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장애정도가 심한</u>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 14.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p>100 분의 50</p>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구분	반환 기준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가. 사용일 1일 전 : 사용료 전액 나. 사용 개시 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 사용료 전액 + 위약금 다. 사용개시일 이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준용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가. 예약한 그날 :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 사용료 전액 다.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 사용료 전액 - 위약금 라. 사용개시일 이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나목 준용

위약금 = 사용료의 10퍼센트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7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16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퀘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2.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I. 정비필요성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정비필요성

- (감면 거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
 -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부처 간 협업) 지자체 운영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관한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II. 법령 상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1 관련 법령(상세는 첨부자료 참조)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위 8개 법령에서 **감면대상 시설·요금 및 감면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도 유사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 ~ 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기타법령	의사상자법	○ 의사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사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의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열거할 것을 권고함